| | 구분 | 직위 | 성명 | 일자 | 서명 |
|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|
| ㈜아이티아이즈 침해사고관리지침은 클라우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문서로서 검토되고 승인됨 | 승인 | 클라우드서비스 최고책임자 | 조왕래 | | |
| | 검토 | 클라우드서비스 관리자 | 김종룡 | | |
| | 작성 | 클라우드서비스 담당자 | 김대회 | | |

침해사고 관리지침

2022.09.28



| 재•개정 이력사항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
| 번호 | 날짜 | 쪽 | 내용 | 담당자 | |
| 1 | 2021.02.05 | 11 | 최초 침해사고 관리지침 Ver1.0 | 박수용 | |
| 2 | 2022.09.28 | 12 | 침해사고 대응훈련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추가 | 김선환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_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본 문서는 ㈜아이티아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컨설팅, 마이그레이션, 매니지드, XaaS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.

제1장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지침은 ㈜아이티아이즈의 「정보보호정책서」에 의거 침해사고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지침은 ㈜아이티아이즈의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㈜아이티아이즈와 계약을 맺어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업체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정의)

-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"침해사고"라 함은 보안정책에 위배되는 모든 사고를 말하며 보안 침해사고, 소프트웨어 이상 및 오류,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정보자산의 손상 등을 포함한다.
- 2. "악성코드"라 함은 컴퓨터바이러스와 달리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지는 않지만,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말한다.
- 3. "백도어"라 함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보호 수단을 우회할 수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을 의미한다.

제2장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체계

제 4 조(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)

- ①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, 긴급연락체계 구축, 침해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차, 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침해사고를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에 따른 이에 따른 보고체계를 정의하여야 한다.
- ③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외부 기관을 통해 구축한 경우 수립된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침해사고의 모니터링, 대응 및 처리와 관련되어 외부 전문가, 전문업체, 전문기관(KISA) 등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침해사고 예방)

- ①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필요 시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현장방문 또는 원격 측정을 통하여 사이버안전대책 이행여부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한다.
- ②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보안관제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초동조치 후 관련 기관에게 신속히 통지한다.
- ③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보안정보, 보안권고문, 또는 취약점 분석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보안업데이트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고, 직원들에게 배포한다.

제6조(침해사고 대응 훈련)

- ①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관한 연 1 회 이상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실시 및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의 결과를 요청할 경우 이를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한다.

제 7조(침해사고 보고)

- ① 외부로부터의 침해시도가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지체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- 1. 모니터링 대상범위 : 침해시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이벤트 로그 등
- 2. 모니터링 방법: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모니터링, 자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
- 3.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
- 4. 모니터링 결과 보고체계
- 5. 침해시도 발견 시 대응절차 등
- ②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상의 침해사고 징후 또는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침해사고 보고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침해사고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 신속히 보고
- 침해사고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조치

- ③ 침해사고 발생 시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용자(정보주체)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통지방법: 전화, 휴대전화, 전자우편, 서비스접속화면등 방법으로 제시함
- 2. 발생내용
- 3. 발생원인
- 4.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확산 방지 조치 현황
- 5.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 방법
- 6. 담당부서 및 연락처

제8조(침해사고 대응)

- ① 정보보호 침해사고 접수 후 정보시스템별 담당자는 침해사고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.
- 1. 침해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침해당한 서버의 네트워크 분리, 공격 포트의 차단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다.
- 2. 침해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시스템의 중단이 통계청 전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시간 종료 후에 서비스를 중단하며, 해당 정보시스템의 중단이 일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 후 즉시 해당 정보시스템을 중단시킨다.
- 3. 응급조치 후 정보보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해당 침해사고 관련 로그 및 제반 증거자료를 수집 및 확보해야 한다.
- 4. 국가정보원 등에서 권고하는 유형별 대응 조치를 취하고,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② 정보보호 침해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1. 악성코드 공격
- 2. 서비스거부 공격
- 3. 비인가접근 공격
- 4. 복합구성 공격

제 9조(비상연락체계 구축)

① 업무별 시스템 담당자 및 관련 외부 사업자(PM)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, 정보보호 관련 상주

근무자, 외부 유지보수 협력업체,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체계를 비치하고, 주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점검한다.

제 10조(침해사고 분석)

- ①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사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보안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,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.
- ② 보안사고 대응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사고 분석 및 로그 수집을 수행한다.
- 서버 및 네트워크 담당자와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 내용을 분석하여 침입 사실, 사고원인 등을 파악한다.
- 서버 및 네트워크 담당자는 증거확보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로그 중 침입흔적을 담은 모든 로그를 백업한다.
- 파일시스템은 상세한 수준으로 덤프를 받은 후, 서명, 일시 등을 기록하고, 덤프파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.
-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점검하여 관련기록을 모두 백업받고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.
- 재침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끊거나 단일 사용자(Single-User)모드에서 작업해야 한다.
- ③ 침입자가 현재 시스템에 침투해 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한다.
-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즉시 해당 시스템을 네트워크 와 분리한 후,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추적여부를 결정한다.
- 침입 후 활동하는 내용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하에 로그 분석을 통하여 침입위치 및 침입대상을 추적한다.
- 침입자를 추적할 수 없거나.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.
- ④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 분석 및 대응 업무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. 이때 협조의 최종결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한다.

제 11 조(증거수집 및 보존)

- ① 서버 및 네트워크 담당자와 정보보호 담당자는 제 10 조에서 분석 및 수집한 증거를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전달한다.
- ② 정보보호 관리자는 침입자 처벌 및 법률적 대응을 위해, 수집된 증거를 사고발생 후 공소시효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결과보고 및 공유)

- ① 침해사고가 처리 및 종결된 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또한 유사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침해사고 관련 정보 및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여야 한다.
- ② 정보보호 담당자는 보안사고대응팀의 각 관련 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호 관리자에게 보고하며,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 1, 2 급에 대하여 보안사고 조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사고 경과와 조치사항을 보고한다.
- 보안사고 분석결과
- 보안사고 대응내역
- 조치계획 및 조치내역
- 재발방지 방안 및 계획
- ③ 개인정보 사고의 경우 보안사고대응팀은 사고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을수행한다.
- 고객이나 언론의 동향 분석
- 법률 Risk 파악
- 피해고객 구제방안 모색 등 사고대응 활동
- ④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우 개인정보관리 담당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
-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
-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
-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- 정보주체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
- 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통보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사후관리)

① 정보보호 관리자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개정, 정보보호시스템 도입,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, 필요 시 보안사고 대응절차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

한다.

- ② 정보보호 관리자는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여 동일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대응 및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정보보호 담당자는 1, 2 등급의 보안사고 관련된 기록을 대외비 이상 등급으로 분류하고, 이를 보존・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법적 또는 규정상 보안사고 관련하여 대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외협력 관련부서는 정보보호 관리자와 협의 후 대응하여야 한다.
- ⑤ 정보보호 관리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정보와 발견된 취약점들을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들에게 공유 및 전파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책의 검토)

본 정책의 적절성을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, 필요 시 개정안을 마련하며 제정, 개정 및 폐기에 대해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(예외 적용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이라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.

- 1. 기술 환경의 변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
- 2. 기술적 관리적 필요에 따라 정책의 적용을 보류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
- 3.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

침해사고 대응결과 보고서

| | 정보보호 | 정보보호 | 정보보호 |
|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담당자 | 관리자 | 최고책임자 |
| 결재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<u>비상연락망</u>

1. 보안사고대응팀 연락망

| 담당업무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| 조왕래 | 010-9655-5668 |
| 정보보호 관리자 | 김종룡 | 010-9162-8205 |
| 정보보호 담당자 | 김대회 | 010-5491-4744 |

2. 관련부서연락망

| 부서명 | 담당자 | 담당업무 | 연락처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서비스운용팀 | 김종룡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총괄 | 010-9162-8205 |
| 서비스운용팀 | 김대회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5491-4744 |
| 서비스운용팀 | 권용찬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3030-5301 |
| 서비스운용팀 | 김은선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8004-6160 |
| 서비스운용팀 | 김재영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4193-7818 |
| 서비스운용팀 | 안지민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5530-7369 |
| 서비스운용팀 | 최유나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2280-9346 |
| 서비스운용팀 | 한유리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4345-9070 |
| 서비스운용팀 | 임미리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7150-1306 |
| 서비스운용팀 | 이해민 | 클라우드 운용 및 고객지원 | 010-2280-6957 |
| 서비스지원팀 | 박수용 |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지원 총괄 | 010-4729-3925 |
| 서비스지원팀 | 이민철 |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지원 | 010-3284-4509 |
| 서비스지원팀 | 임철현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5653-9986 |
| 서비스지원팀 | 이동수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9473-6696 |
| 서비스지원팀 | 김선환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4169-6794 |
| 서비스지원팀 | 이보리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3896-3989 |
| 서비스지원팀 | 박경실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9148-1055 |
| 서비스지원팀 | 김건우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6281-7356 |
| 서비스지원팀 | 박성진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8795-2061 |
| 서비스지원팀 | 오예진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3120-3302 |
| 서비스지원팀 | 윤소영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5637-8297 |
| 기술지원(부설연구소) | 주종민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4108-1737 |
| 기술지원(부설연구소) | 김한성 | 클라우드 기술지원 | 010-4169-2032 |

3. 관련업체 연락망

| 부서명 | 담당자 | 담당업무 |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NaverCloud(IT Security) | 정보보호담당 | 정보보호 업무 | 1544-5876 |
| NaverCloud | 고객지원 | 고객지원 | 1833-5055 |
| KT G-cloud | 고객센터 | 고객센터 및 정보보호 | 080-2580-005 |

4. 관계기관 연락망

| 부서명 | 담당자 | 담당업무 | 연락처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KISA 해킹신고센터 | 해킹침해센터 | 해킹·스팸 개인정보 침해 | 118 |
|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| 사이버수사과 |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| 02-3480-3570 |
|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| 사이버안전국 |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| 182 |